

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제 8 조(회의록)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제 9 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 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1994. 9. 9
시민보사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1994년 8월 8일 영등포구청장 제출
나. 회부일자: 1994년 9월 7일 시민보사위원회 회부
다. 상정일자: 1994년 9월 9일 제27회(임시회) 제1차 시민보사위원회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보건소장 文仁弘)

가. 제안이유
의료법개정으로 보건소 등록치료 환자등의 진료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 기관 또는 환자가 그 기록 및 사본의 송부를 요구할 경우 보건소에서 X-선 필름사본을 발급함으로써 조기치료 효과 및 자기건강관리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건강진단 수첩 및 진단서, 제증명 종목에 X-선 필름사본을 추가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: 趙大顯)

의료법 제20조 제2항의 개정으로 보건소 등록치료 환자등의 진료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 기관 또는 환자가 그 기록 및 사본을 요구할 경우 보건소에서 X-선 필름사본을 발급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보건소 수가조례 제2조 2항 제1호 별표 "하항"에 X-선 필름사본 발급 수수료를 신설코자

신, 구조문 대비표

현행					개정(안)				
별 표 (수 수 료 액)					별 표 (수 수 료 액)				
구	분	종 목	단 위	금 액 비 고	구	분	종 목	단 위	금 액 비 고
1. 건강진단수 첩 및 진단서, 제증명		가.-파.(생략)			1. 건강진단수 첩 및 진단서, 제증명		가.-파.(현행과 같음)		
		신	설				하X-선 필름 사 본발급	1매 (14*14 인치)	3,000 원
2.-5.(생략)					2.-5.(현행과 같음)				

하는 것이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됨.

4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 중개정조례(안)

의안번호 253 제출년월일: 1994. 8. 8
제출자: 영등포구청장

1. 개정사유

의료법 개정으로 보건소 등록치료 환자 등의 진료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 기관 또는 환자가 그 기록 및 사본의 송부를 요구할 경우 보건소에서 X-선 필름사본을 발급함으로써 조기치료 효과 및 자기건강관리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건강진단수첩 및 진단서, 제증명 종목에 X-선 필름사본 추가

3. 관계법규

- 보건소법 제8조 제2항
-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
-의료법 제20조 제2항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 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〈별표〉중 "1. 건강진단 수첩 및 진단서, 제증명"란 "하"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구	분	종 목	단 위	금 액 비 고
1. 건강진단수첩 및 진단서, 제증명		하. X-선 필름 사본 발	1매 (14*14 인치)	3,000원
		급		

부 칙

〈시행일〉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